강의 계약서

교육과목 : 파이썬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 입문 CAMP 1기

교육기간: 2019년 2월 23일~2019년 4월 13일

강의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주 1회, 8주, 총 24시간)

위 강의(이하 "강의")와 관련하여 김경원 (이하 "강사")과 패스트캠퍼스 주식회사(이하 "캠퍼스")는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한다.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 캠퍼스와 강사는 성공적인 강의를 위해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한다.

제2조 (강사의 업무) 강사는 강의 준비, 수강생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수업 외 커뮤니케이션 유도 및 정보 제공 등을 맡는다.

- 1. 강사는 강의에 필요한 제반 자료 준비를 맡으며, 강의용 수업 자료를 파일의 형태로 수업시작 72시간 전까지 캠퍼스에 제공한다.
- 캠퍼스가 해당 수업자료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경우 강사는 수업시작 24시간 전까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수업자료를 수정해야 한다.
- 3. 수강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강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한다.
- 4. 수업 외 커뮤니케이션 유도 및 정보 제공: 수강생 간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모바일 메시징, 수업 관련 자료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캠퍼스와 협의 하에 진행한다.

제3조 (캠퍼스의 업무) 캠퍼스는 홍보, 장소의 제공, 결제, 수강료 정산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제공한다.

- 강의용 수업자료를 파일 또는 인쇄물의 형태로 수강생들에게 제공한다. 캠퍼스는 강사로부터 받은 모든 수업 자료를 앞에서 언급한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사전에 정한 범위 외의 용도로 이용이 필요할 때엔 강사와 협의해야 한다.
- 2. 수업시작 72시간 전 강사로부터 받은 수업자료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 캠퍼스는 이를 강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3. 인프라: 캠퍼스는 강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책임진다. 모든 제반 사항에는 홍보, 결제 및 참가 안내, 수강료 정산 외에도 강의장의 제공, 기타 강의에 필요한 준비물 등을 포함한다.

4. 강사역량 향상을 위한 의견: 캠퍼스는 강의에 참여하여 강사의 강의역량을 체크하고, 강의력 향상을 위한 강의코칭, 피드백 등을 제공한다.

제4조 (강사료의 산정 및 지급)

- 1. 강사료의 산정 기준은 1시간당 200,000으로 한다.
- 2. 강사료는 강의 종강일 기준으로 21일 이내에 총 4.800.000원을 지급한다.
- 3. 강사료는 사업소득의 형태로 원천세 3.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교육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 (지식재산권)

- 1. 캠퍼스는 홍보 및 마케팅을 할 경우 강사의 이름, 아호, 이미지, 초상, 경력, 전기, 뉴스 기사 등(이하 "강사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강사 초상 등을 이용하는 방법, 내용에 관해서는 강사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 2. 캠퍼스와 강사가 공동의 노력으로 제작한 강의 및 강의를 위하여 제작된 교재(이하 "강의 컨텐츠")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캠퍼스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캠퍼스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방법 등에 관하여 강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권 행사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사와 수익을 분배하되, 수익 분배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추후 협의한다.
- 3. 강사의 노력으로만 제작한 강의 컨텐츠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강사의 단독 소유로한다. 다만 강사의 노력으로만 제작된 강의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의교재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캠퍼스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며, 캠퍼스의 사전승인 없이는 강의를 녹화하거나 인터넷, 방송, 디지털 저장 매체 등을 통하여 강의를 배포할 수 없다.
- 4. 강사가 단독으로 제작한 강의 컨텐츠와 관련하여, 제3자가 캠퍼스에 대해 저작권 기타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내 및 국외에서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제기한 경우, 강사는 캠퍼스를 면책시키고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캠퍼스를 보호하며이로 인하여 캠퍼스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5. 캠퍼스는 강의 컨텐츠를 캠퍼스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강사에 대하여 강사 명의의 등록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6. 제3자가 강의 컨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캠퍼스 또는 강사가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캠퍼스와 강사는 상호 협력하여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단, 이에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성실의무)

- 1. 강사는 커리큘럼에 따른 강의일정을 준수한다.
- 2. 강사는 수업 10분 전에 도착하여 강의 자료의 정상적인 실행 확인을 하여야 한다.
- 3. 강사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사유가 생긴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연락 및 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경업금지의무)

- 1. 강사는 계약기간 및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캠퍼스의 경쟁사에 동일 또는 유사한 강의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제1항의 경쟁사는 다음 각 목의 업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 2조 1~4항에서 규정하는 교육기관

제9조 (손해배상)

- 1. 캠퍼스와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된 교육시간이 시작된 후 20분 안에 도착하여 지각한 경우, 위에서 정한 회당 강사료의 80% 만 지급하며, 20분이 지난 후에 도착할 경우에는 60%만 지급한다.
- 2. 캠퍼스와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된 교육시간에 30분 또는 그 이상 지각한 것은 강의 무단 취소로 간주하여 해당 회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발생한 수강생과 캠퍼스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
- 3. 캠퍼스는 천재지변 혹은 강사의 위중한 개인사(경조사, 신변 및 업무상 중대한 위태, 강의를 진행하기 힘든 건강상황 등)로 인한 지각 및 강의 취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6조 제6항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4. 강사의 계약 위반사항 발생시 강사는 캠퍼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 5. 캠퍼스의 귀책사유로 인해 강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캠퍼스가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캠퍼스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10조 (폐강) 캠퍼스와 강사는 협의를 통해 최소 인원 이상이 모객되지 않을 경우 강의를 폐강할 수 있다.

- 1. 캠퍼스와 강사는 유료 등록자가 10명 이하일 경우 해당 과정을 폐강한다.
- 2. 강의가 폐강될 경우, 해당 홍보를 위해 지출된 마케팅 비용은 캠퍼스가 부담한다.

제11조 (캠퍼스의 면책)

캠퍼스는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무단으로 녹화하여 배포하거나, 강의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캠퍼스가 그와 같은 사전 고지를 한 경우, 캠퍼스가 수강생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다. 2. 강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소속으로 같은 조 제2호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의 신고의무를 사전에 완료하는 등 청탁금지법상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민감 정보의 요구)

- 1. 캠퍼스는 개인정보보호법,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및 하위 법령 및 관계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사에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등 필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강사의 민감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관련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2. 강사는 제1항에 따른 캠퍼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강사가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캠퍼스가 법령 또는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할 수 없는 때에는 캠퍼스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3. 강사는 제2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캠퍼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캠퍼스와 강사는 어느 일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시정 또는 이행을 최고하고 그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사항이 시정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상의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2019년 2월 13일

캠퍼스

상 호: 패스트캠퍼스 주식회사

주 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64 미왕빌딩 10층, 11층

전화번호: 02-501-9396

대표이사: 박지웅, 이강민



강 사

주민등록번호 : 831104-1852423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79길 1

성 명: 김경원 / (25)